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와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도 금고 외에 전용계좌 취급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지정 금융기관 수: 3개 금융기관 이내
 - * 신탁,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여러 금융기관 중 각 조합(금고)별 1개 금융기관만 선정
3.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기관
 - ① 접수일 기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이상 인정받은 금융기관이면서,
 - ②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

③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④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전산연계가 완료되어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관

4.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08. 27.(목) ~ 09. 11.(금) [15일간]

○ 접수기간: 2026. 09. 09.(수) 09:00 ~ 09. 11.(금) 18:00

○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3층)

○ 제출부수: 6부(원본 1부 및 사본 5부)

○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신청서,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

※ 세부 제출서류 안내 ※

1.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2.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자료(최근 3개년)
3. ①총자산, ②순자본비율, ③순자산이익률, ④고정이하 여신비율,
⑤경영실태평가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 등 감독
기관 공시 자료(최근 3개년)
4. 도 세입 수납 처리 건수(‘24~’25년 2개년 및 ‘26년 상반기 자료)
5. 도내 영업점 수, 지역별 분포도 및 ATM 설치 대수 증빙 자료
6. 최근 2개년 ESG 경영실적 증빙 자료
7.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기타 증빙 자료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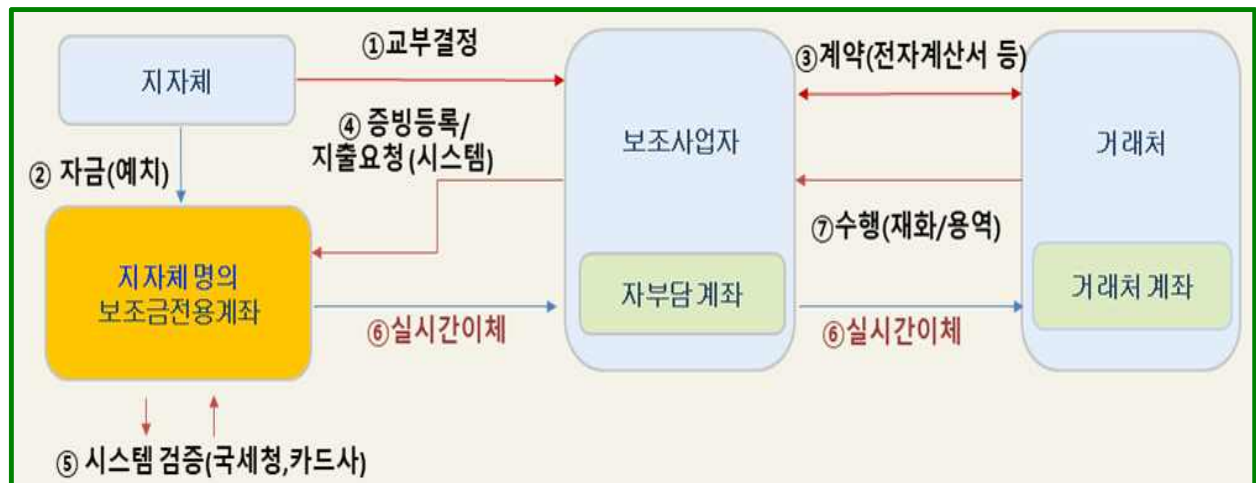
5. 주요업무

○ 지방보조금 수납·예치 및 지급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관리

○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좌 개설 및 보조금 취급 업무 등

< 참고 > 보조금 전용계좌 흐름도



- ☞ **(보조금 예치)**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전용계좌”에, 보조사업자 자부담은 자부담 계좌에 각각 예치하며, 보탬e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 ☞ **(전자검증·실시간 집행)**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증빙자료(전자계산서, 카드사용 내역 등)의 진위 여부, 유효성 등을 검증(국세청, 카드사와 연계) 한 후 거래처나 카드 결제계좌로 이체
- ※ (이체)보조금전용계좌 →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자부담 합산) → 거래처 계좌

6.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별표 1] 참고

7. 심사 및 평가 방법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신용도, 금리, 편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함
- 각 심사항목은 2026년 6월 30일 결산 기준 자료로 평가함
- 신탁, 새마을금고, 수협 등 각 금융기관별 단독 응모 경우에는 대면 평가 없이 심사위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함
- 각 금융기관별 복수 금융기관이 응모한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평균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신용도 및 재무구조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박탈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최종 선정 후에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허위 사실 작성·제출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추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사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선정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 보완 및 관계자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금고(조합) 내 여러 금융기관(법인) 중 1개의 금융기관(법인)만 선정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함
 - 1개 금융기관(법인)만 협약을 체결하여도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금고(조합)의 계좌를 보탬e 등록계좌로 이용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심사 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함
- 전용계좌 금리 및 전용카드 적립률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적용함.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전용계좌 예치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은 협약일로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은 협약을 체결한 금고(조합)에 있음
- 협약 체결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연계 불가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을 해지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063-280-4147)로 문의바람

[별표1] 대면평가 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비 고
		100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자금운용능력 평가)	· 국내평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 : 10 · 총자산 및 순자본비율(안정성) : 10 · 순자산이익률(수익성) : 10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10	40	정량 평가
경영실태평가 (경영 안정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 경영평가 : 20	20	정량 평가
제안금리	· 전용계좌 제안 금리 : 5 · 전용카드(신용·체크) 적립률 : 5	10	정량 평가
이용 편의성	· 세입세출업무 및 보조금 자금관리 능력 : 10 · 전용계좌 이용 편의 증진 방안 : 10	20	정성 평가
지역기여도	· ESG 활동 실적 : 5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자체 협력 방안 : 5	10	정성 평가

[별표 2] 평가원칙 및 방법

- 같은 조합(금고) 내에서 복수의 조합(금고)이 신청했을 경우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동일 조합(금고) 간 경쟁을 통해 협약 대상자를 선정함
 - (예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각각 두 개의 법인이 신청한 경우 같은 금고(조합) 간 평가를 통해 최종 협약 대상자 한 곳씩 선정
- 대면평가 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각 조합(금고)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함
 - 정량평가 항목에 한하며,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각 조합(금고)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및 대면평가 시 질의·응답을 통해 각 심사위원이 평가함
- 각 평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20%에서 최소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 같은 조합(금고) 내에서 하나의 조합(금고)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심사하며, 심사위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선정함
- 적정성 평가 세부항목 중 5개 이상이 '부'로 평가될 경우에는 종합의견을 '부'로 평가하며, 해당 기관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3] 대면평가 심사표

대면평가 심사표

□ 금융기관명:

항 목	배점	세부항목	평 점		
합 계	100		점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자금운용 능력평가)	40	소 계	점		
			1순위	2순위	3순위
	10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8	6
	5	총자산 규모	5	4	3
	5	순자본비율	5	4	3
	10	순자산이익률	10	8	6
10	고정이하 여신비율	10	8	6	
경영실태평가 (경영 안정성)	20	소 계	점		
	20	경영실태평가 등급	20(우수)	16(양호)	
제안 금리	10	소 계	점		
			1순위	2순위	3순위
	5	전용계좌 제안 금리	5	4	3
	2.5	신용카드 적립률	2.5	2.0	1.5
	2.5	체크카드 적립률	2.5	2.0	1.5

항 목	배점	세부항목	평 점		
이용 편의성	20	소 계	점		
	10	세입세출업무 및 보조금 자금관리 능력	10	8	6
	10	전용계좌 이용 편의 증진 방안	10	8	6
지역 기여도	10	소 계	점		
	5	ESG 활동 실적	5	4	3
	5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자체 협력 방안	5	4	3
종합 의견					

2026. . .

심사위원: (서명)

[별표 4] 대면평가 합계표

대면평가 합계표

	금융기관 A	금융기관 B	금융기관 C	비 고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위원4				
심사위원5				
총 점수				
평 균				
선 정				

2026. . .

심사위원:(서명)

심사위원:(서명)

심사위원:(서명)

심사위원:(서명)

심사위원:(서명)

[별표 5]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적정성 평가표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적정성 평가표

□ 금융기관명:

항 목	세부항목	적정성 평가	
		여	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자금운용 능력평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총자산 규모		
	순자본비율		
	순자산이익률		
	고정이하 여신비율		
경영실태평가 (경영 안정성)	경영실태평가 등급		
제안 금리	전용계좌 제안 금리		
	신용카드 적립률		
	체크카드 적립률		
이용 편의성 (보조사업자 편의 증진)	세입세출업무 및 보조금 자금관리 능력		
	전용계좌 이용 편의 증진 방안		
지역기여도	ESG 활동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자체 협력 방안		
종합 의견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적정여부(여 / 부)		

2026. . .

심사위원: (서명)

[별표 6]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최종 선정서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최종 선정서

- ☐ 금융기관명:
- ☐ 선 정 일:
- ☐ 선정 방법: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전북특별자치도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추가 선정을 위해 2026년 9월 00일 개최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을 최종 협약 대상으로 선정함

2026. 09. .

참여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서식 1]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기관 개요	법인명		법 등 로 크 인 호	
	대표자명		연락처	
	소재지		전화	
상기 법인과 그 대표자는 지방회계법시행령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아래의 붙임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증빙서류 6부(원본 1부, 사본 5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보탬e 시스템 연계 관련 증빙 서류 1부 4. 감독기관 경영실태평가 등 각 평가항목 증빙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OO 은행 기관장 000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지정 제안서

2026. . .

○○ 금융기관

※ 작성요령

- 전체 7페이지 범위 내 작성 (표지, 증빙서류 제외)
- 표지와 목차,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A4용지 단면으로 출력 후 좌철
-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와 제안서는 심사위원 수에 맞게 제출
- 제안서는 2026. 6. 30. 기준으로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순서대로 작성
- 추진 실적 등 관련 근거 등을 포함하여 2년 이내 실적만 인정
- 금액은 원단위로 작성하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할 것

1**법인 현황****1. 법 인 명:****2. 법인개요**

- 연혁
-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직책	주요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4. 본점 및 지점 현황

○

5.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신청목적 및 운영 계획**

-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기재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구 분	평가기관	평가일자	평가결과
OO 금고(조합)			

주) ① 평가는 가장 최근에 평가 받은 사항을 기재

② NICE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kodata에 한함

③ 증빙자료 첨부(3개년 자료 첨부)

나. 재무구조(경영지표) 안정성

(단위: 원, %)

항 목 별	금액 또는 비율	기준일자
총자산규모		
순자본비율		
순자산이익률		
고정이하 여신비율		

주) ① 총자산은 원단위까지 기재

②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 등의 공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④ 증빙자료 첨부(3개년 자료 첨부)

2. 경영실태평가

구 분	평가기관	평가일자	평가결과
OO 조합			

주) ①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 등의 공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② 증빙자료 첨부(3개년 자료 첨부)

3. 제안금리

항 목 별	제안 금리	비고 또는 의견
전용계좌 금리		
전용카드(신용) 적립률		
전용카드(체크) 적립률		

- 주) 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② 전용계좌 금리는 0.59% 이상, 신용카드 적립률은 0.5% 이상, 체크카드 적립률은 0.2%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이용 편의성

가. 세입세출업무 및 보조금 자금관리 능력

- 보탬e 시스템과의 연계 안정성 및 장애 대응 체계 여부
 - (서술형 작성)

○ 도 세입 수납 처리 건수

구 분	처리 건수	처리 금액	비 고
합 계			
2026년 6월 말			
2025년			
2024년			

- 주)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에 한하며, 전자납부(인터넷, 신용카드, 무인자동 수납기 등) 실적 포함
 ② 처리건수는 2024~2025년(2개년) 및 2026년 상반기 기준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

나. 전용계좌 이용 편의 증진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점 수, 지역별 분포도, ATM 설치 대수

구 분	본점 수	지점 수	ATM	비 고
전북특별자치도				

- 주) ①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계획 등
 - (서술형 작성)

5. 지역 기여도

가. ESG 활동 실적

일 시	실 적	내 용

- 주) ① 최근 2년 활동 실적 작성
 ② 실적 작성 시 공신력 있는 근거 포함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

나.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자체 협력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 의지 및 기여 실적
 - (서술형 작성)
- 보조금 관리 외 도정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안
 - (서술형 작성)

- 주) ① 증빙자료 첨부

청렴이행서약서

당사(신청 금융기관명 작성)는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에서 공개 모집하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확대'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공개 모집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개 모집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기관명:

대표자: (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업무 협약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은행(이하 "참여은행"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와 참여은행(이하 "각 당사자"라 한다) 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과 관련하여 도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전용계좌 개설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의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전용계좌를 말한다.
5.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용계좌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를 따른다.

제4조(협약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 종료일을 정한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최초 협약 당시 요구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변경되더라도 지방보조금이 입금되어있는 전용계좌는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협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 요청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각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전용계좌의 요건) ① 전용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성예금(MMDA) 등

명칭에 관계없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타행 수수료 면제 등은 도의 원활한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전용계좌는 참여은행의 기존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참여은행의 기존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 간 서면으로 상호합의 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전용계좌의 금리) ① 금리는 상품의 특성, 수수료, 기준금리 등을 감안하여 〇.〇%로 적용하며,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산정하고, 그 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당사자 합의로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③ 도는 각 당사자 간 합의한 금리를 지방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입·출금 관리) ① 전용계좌의 입금방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전용계좌의 출금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또는 펌뱅킹을 통한 이체만 가능하며, 현금인출 및 인터넷뱅킹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출금은 할 수 없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출금이 가능하다.

제9조(핀뱅킹 이용) ① 도는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따라 도와 지방보조사업자 전용계좌의 핀뱅킹 이용을 위해 참여은행과 서면으로 핀뱅킹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핀뱅킹 협약과 관련하여 이체내역, 전용계좌정보 등을 담은 전문의 송수신 방법, 내용, 통신표준 및 장애처리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시스템 연계 업무지침서를 따르며, 업무지침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은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뿐만 아니라 협약종료(해지를 포함한다)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 합의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협약서의 보관)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

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사본을 등록한다.

제14조(기타) ① 각 당사자는 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 간에 본 협약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 위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시도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이 원 택 (인)

○○은행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시·읍·면·동 상세주소

은행장 ◇◇◇ (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카드 업무 협약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은행 주식회사(이하 “참여은행”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와 참여은행(이하 “각 당사자”라 한다)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카드 발급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의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란 협약으로 지정한 카드사가 지방보조금 관리를 목적으로 발급한 전용카드를 말한다.
5. “캐시백”이란 지방보조금전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적립금액을 말한다.
6.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용카드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도 조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를 따른다.

제4조(협약 및 협약기간) ①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 종료일을 정한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협약기간의 종료 또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급된 전용카드는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협약기간 종료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 요청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각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전용카드의 요건) ① 전용카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전용카드 상단에 지방보조금시스템의 BI(Brand Identity) 및 전용카드명칭을 사용한다.
 2. 전용카드는 지방보조금 사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제한 업종을 두되, 사용제한 업종은 기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제한 업종의 상세 리스트는 각 당사자 실무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3.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등의 부가 기능은 없으며, 부가 혜택은 두지 않는다.
- ② 전용카드는 참여은행의 기존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도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은행은 기존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동 내용을 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합의 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전용카드의 발급) 전용카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발급 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으로 하며, 발급 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참여은행과 금융결제원 간 중계수수료는 참여은행이 부담한다.
3. 전용카드 연회비는 없으며, 발급수수료, SMS수수료는 면제하되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4. 선증빙·후검증 등 지방보조금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부터 승인받은 후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별 전용카드 이용한도는 참여은행에서 결정하되,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국내전용카드 외에 해외겸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부터 승인받은 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전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① 전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월 1회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제일은 참여은행에서 지정한 카드 결제일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선택한 날짜로 하되,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하면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캐시백) ① 참여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용카드 이용액에 대하여 〇.〇%(신용카드), 〇.〇%(체크카드)(이하 '캐시백률'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캐시백률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 체결한 때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재산정하고, 그 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재산정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카드 이용액은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지급 대상은 각 카드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참여은행에 적용되는 전용카드 이용액의 산출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⑤ 제1항의 금액은 매년 1월 초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전용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은 상호합의하여 정하되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전용카드 정보관리 및 전송) ① 참여은행은 전용카드 발급시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카드사용 개시 및 중지, 매입내역, 결제내역, 카드정보 등을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전송,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는다.

② 참여은행은 카드발급 내역을 지방보조금시스템에 일별 전송한다.

③ 카드사용 개시 및 중지, 매입내역, 결제내역, 카드정보 등을 담은 전문의 송수신 방법, 내용, 통신표준, 장애처리 등은 지방보조금시스템의 연계 업무지침서를 따르며, 업무지침서가 정하지 않은 요건 및 특이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은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뿐만 아니라 협약종료(해지를 포함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손해배상) 각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 합의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지방보조금시
스템에 사본을 등록한다.

제15조(기타) ① 각 당사자는 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 간에 본 협약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
위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와 같은 시도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이 원 택 (인)

○○은행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시·읍·면·동 상세주소

은행장 ◇◇◇ (인)